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석면안전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제출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석면해체·제거 작업의 감리부실 등에 대하여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등록취소 등 처벌을 신설·강화하는 한편,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교체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는 발주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석면해체·제거 작업이 보다 안전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석면안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1369호, 2026. 2. 19. 공포, 2027. 2. 20. 시행)됨에 따라 감리인의 행정처분 기준 및 과태료 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취소 등 위반행위별 행정처분기준 마련
(시행령 별표 3의3 개정)
- 나. 감리인 교체요청 조치 미이행, 감리인 시정·조치요청 등에 따른 감리인 변경 등 불이익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구체화(시행령 별표 5 개정)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3 제2호의 표 및 별표 5 제2호의 표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1차 위반	2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법 제30조의6 제1항제1호	등록 취소	
나. 법 제3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	법 제30조의6 제1항제2호	등록 취소	
다. 법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등록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 제30조의6 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3개월 이내의 시정 명령	영업 정지 3개월
라. 법 제30조의3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같은 조 제4호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결격사유가 없는 임원으로 바꿔 선임한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30조의6 제1항제4호	등록 취소	
마. 2년에 2회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 경우	법 제30조의6 제1항제5호	등록 취소	
바. 법 제30조의5에 따른 평가 결과 기 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의 등급을 받은 경우	법 제30조의6 제2항제2호	6개월 이내의 시정 명령	

사. 법 제30조의6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30조의6제1항제6호	영업정지 3개월	
아. 법 제30조의4제1항제6호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인 완료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법 제30조의6제1항제7호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자. 법 제30조의5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평가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한 경우	법 제30조의6제1항제8호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차. 법 제30조의5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작업감리인에 대한 평가 결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의 등급을 6년에 2회 이상 받은 경우	법 제30조의6제1항제9호	영업정지 3개월	등록 취소
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감리를 부실하게 한 경우	법 제30조의6제1항제10호	영업정지 3개월	등록 취소
타. 다른 행정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요구한 경우 1) 등록취소를 요구한 경우 2) 영업정지를 요구한 경우	법 제30조의6제1항제11호	등록취소 위반내용에 따라 해당 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 준용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더. (생략)				
러. 법 제30조제5항의 교체요청을 받고도 이에 따르지 않은 경우 1)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지정 서류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2) 감리인의 업무수행 중 석면해체·제거 작업자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시정·중지요청을 하지 않은 경우 3) 감리인의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4) 감리인이 고의 또는 중대 과실로 업무를 위반한 경우 5) 감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를 거부하거나 수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49조제3항제8호	200 200 200 200 200	300 300 300 300 300	500 500 500 500 500
머. 법 제30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현행과 같음)	50	100	150
버. 법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공사비용에 석면해체비용 등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	(현행과 같음)	500	700	1,500
서. 법 제31조제3항을 위반하여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시 측정기관에 측정값을 조작하게 하는 등 측정·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지시를 한 경우	법 제49조제3항제9호	300	400	500
어. 법 제31조제4항을 위반하여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한 시정 또는 중지 요청을 이유로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변경 등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게 불이익을 준 경우	법 제49조제3항제10호	200	300	500
저. 법 제40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1)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 2)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거짓으로 하는 경우 3)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49조제3항제11호	50 100 200	100 200 300	200 300 500

부 칙

이 영은 2027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